#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
의 안 번 호 4355 제출연월일: 2024. 9. 26.

제 출 자:정 부

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지방재정 운용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요 재정사업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재정운용에 반영하도록 하고, 특 별회계의 무분별한 신설을 억제하기 위하여 법률로 설치하는 특별회 계는 이 법의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설치할 수 없 도록 하려는 것임(안 제5조제3항, 제9조제3항 신설 및 별표).

법률 제 호

##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
지방재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3항 중 "반영할 수 있다"를 "반영하여야 한다"로 한다.

제9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③ 제2항 본문에 따라 법률로 설치하는 특별회계는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이를 설치할 수 없다.

별표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## [별표]

### 지방자치단체 특별회계 설치 근거 법률(제9조제3항 관련)

- 1. 「건축법」 제87조의3
- 2. 「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」 제31조
- 3. 「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」 제27조의7
- 4.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70조제1항
- 5. 「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」 제27조
- 6. 「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」 제29조
- 7. 「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」 제11조의7
- 8. 「댐건설·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」 제44조제3항
- 9. 「도시개발법」 제60조
- 10. 「도시교통정비 촉진법」 제49조
- 11. 「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」 제28조
- 12. 「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」 제24조
- 13. 「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6조의2
- 14. 「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」 제39조의19
- 15. 「소방재정지원 및 시·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」 제3조
- 16. 「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」 제38조
- 17. 「영산강·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」 제27조
- 18. 「유료도로법」 제24조
- 19. 「주차장법」 제21조의2
- 20. 「주택법」 제84조
- 21. 「중・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」 제9조
- 22. 「지방공기업법」 제13조
- 23. 「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」 제38조
- 24. 「지하수법」 제30조의2
- 25. 「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5조의4
- 26. 「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」 제16조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5조(성과 중심의 지방재정 운	제5조(성과 중심의 지방재정 운
용) ①・② (생 략)	용) ①・② (현행과 같음)
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	③
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	
요 재정사업을 평가하고 그 결	
과를 재정운용에 <u>반영할 수 있</u>	<u>반영하여야 한</u>
<u>다</u> .	<u>다</u> .
④ (생 략)	④ (현행과 같음)
제9조(회계의 구분) ①・② (생	제9조(회계의 구분) ①・② (현행
략)	과 같음)
<u>&lt;신 설&gt;</u>	③ 제2항 본문에 따라 법률로
	설치하는 특별회계는 별표에
	규정된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
	고는 이를 설치할 수 없다.
<u>③</u> · <u>④</u> (생 략)	<u>④</u> ・ <u>⑤</u> (현행 제3항 및 제4항
	과 같음)